

#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0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년 5월 11일

제출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- 고성군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운영의 활성화에 앞서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

## 2. 주요내용

-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 개정(안 제3조)
-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현실화를 위해 일부 입장료 인상과 어린이 및 단체의 입장요금 삭제(안 별표1)
- 주차요금을 수수료에 별도로 추가하여 자연발생유원지 적정관리(안 제9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지금까지 관내 자연발생유원지는 전무했으며 신규지정에 앞서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임
- 입법예고 : 2004. 11. 24. ~ 2004. 12. 13.
- 입법예고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
## 4. 본문 : 덧붙임

##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”를 “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중 “수수료는 입장객 및 청소의무자(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)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”를 “수수료 중 입장요금은 별표1과 같다”로, ““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””를 “「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고,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주차요금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11조제3호중 “6세이하”를 “12세이하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폐기물관리법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”으로 하고, 제2조제1호중 “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”을 “「자연공원법」 및 「관광진흥법」”으로, 동조제2호중 “폐기물관리법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”으로 하고, 제10조제1호 및 제16조중 “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”를 각각 “「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# 입 장 요 금 (제9조제2항 관련)

구 분	어 른	청소년, 학생, 군인
개 인	500원	300원

비고 :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어 른 : 25세이상인 자로서 청소년, 학생,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함.
2. 청소년 : 13세이상인 2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.
3. 학 생 :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,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.
4. 군 인 :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(전투경찰, 순경, 경비교도 및 공익요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[별표 2]

### 주 차 요 금 (제9조제3항 관련)

구 분	당 일	체류(숙박)	비 고
승용차	1,000원	2,000원	12인용 이하
버 스	2,000원	3,000원	12인용 초과
화물차	1,500원	2,500원	-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: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</p> <p><b>제3조(지정)</b> ①자연발생 유원지는 <u>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</u>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.</p> <p>②(생 략)</p> <p><b>제9조(수수료)</b> ①(생 략)</p> <p>②수수료는 <u>입장객 및 청소의무자(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)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.</u> 다만,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"<u>고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</u>"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<b>제11조(수수료의 면제)</b> (생 략)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<u>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</u></p> <p>4. (생 략)</p>	<p>제명 :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</p> <p><b>제3조(지정)</b> ①----- 「<u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</u>」 제9조제2항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9조(수수료)</b>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수수료 중 입장요금은 별표 1과 같다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「<u>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</u>」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주차요금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p> <p><b>제11조(수수료의 면제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12세이하</u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<현행>

[별표 1]

입장요금수수료의 요금표(제9조 제2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어 른	청소년, 학생, 군인	어 린 이
개 인	400	300	140
단 체	300	200	100

비고 :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어 른 : 25세이상인 자로서 청소년, 학생,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함.
2. 청소년 : 13세이상인 2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.
3. 학 생 :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,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.
4. 군 인 :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(전투경찰, 순경, 경비교도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5. 어린이 :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.
6. 단 체 : 30인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<개정안>

[별표 1]

## 입 장 요 금 (제9조제2항 관련)

구 분	어 른	청소년, 학생, 군인
개 인	500원	300원

비고 :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어 른 : 25세이상인 자로서 청소년, 학생,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함.
2. 청소년 : 13세이상인 2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.
3. 학 생 :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,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.
4. 군 인 :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(전투경찰, 순경, 경비교도 및 공익요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[별표 2]

## 주 차 요 금 (제9조제3항 관련)

구 분	당 일	체류(숙박)	비 고
승용차	1,000원	2,000원	12인용 이하
버 스	2,000원	3,000원	12인용 초과
화물차	1,500원	2,500원	=